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 의안번호 : 3491
- 발 의 자 : 박수빈 의원(찬성자 18명)
- 발 의 일 : 2026년 2월 9일
- 회 부 일 : 2026년 2월 12일

### 2. 제안이유

- 서울시 부속의원(의무실, 치과, 한의원)은 진료, 처방, 예방접종, 건강상담, 물리치료 등 1차 진료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직원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현재 부속의원의 이용 대상은 관련 법령·조례에 따라 서울시 소속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원, 시의원 등으로 한정되어 있음. 이로 인해 타 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이나 사회복지무요원은 서울시에서 실제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속의원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기본적인 진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등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무요원과 파견 공무원에 대해서도 부속의원 진료 등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형평성 있는 후생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무요원 및 파견 공무원의 부속의원 이용 근거 조항 신설(안 제3조 제4항)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2026. 2. 20. ~ 2. 24.) 결과 :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본 개정안’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청 및 사업소 등에서 근무하는 다른 소속공무원과 사회복지무요원도 서울특별시청 부속의원(의무실, 치과, 한의원) 진료가 가능하도록 근거(안 제3조제4항 신설)를 마련해 다른 소속 기관 파견 공무원과 사회복지무요원의 실질적 근무 여건 개선 및 형평성 있는 후생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 〈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조 문	주 요 내 용
제3조(적용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를 “시”로 약칭 사용(제1항, 제2항제4호, 제3항)</li> <li>- 시에 근무 중인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 사회복지무요원의 부속의원 이용 근거 신설(제4항)</li> </ul>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u>서울특별시</u>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p> <p>② (생략)</p> <p>1. ~ 3. (생략)</p> <p>4. 시장이 제8조에 따른 <u>서울특별시</u>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p> <p>③ 시장은 <u>서울특별시</u>에 근무 중인 청원경찰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u>대하여도</u>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p> <p>&lt;신설&gt;</p>	<p>제3조(적용범위) ① ----- <u>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u> -----.</p> <p>②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시-----</p> <p>-----</p> <p>-----</p> <p>③ ----- 시에 -----</p> <p>-----</p> <p><u>대해서도</u> -----</p> <p>-----.</p> <p>④ 시장은 시에 근무 중인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 사회복지무요원 등에 대해서도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p>

○ 서울특별시청부속의원(이하 '부속의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함) 직원의 진료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부속 의료기관으로, 현행 조례(제3조) 및 규칙(제2조)에 따른 이용 대상자는 소속 공무원,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직, 촉탁직으로 한정하고 있음.

※ 현재 부속의원 이용 대상자 수는 약 13,000명(공무원 10,598명, 청원경찰 68명, 공무직 2,052명, 시의원 112명)이며, 일평균 이용자 수는 약 100명(의무실 60명, 치과 13명, 한의원 21명)임(행정국, 2026년 2월 2일 별도 제출자료 참조).

「의료법」 제35조(의료기관 개설 특례) ① 제33조제1항·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자 외의 자가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수용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 의료기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설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절차·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그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사업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근무 중인 청원경찰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 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2. 소속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부속 의료기관·체력단련실·심리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직원 진료 규칙」 제2조(직원의 범위) 서울특별시청부속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이용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서울특별시청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을 포함한다.)

2. 서울특별시의회의원

3. 서울특별시 공무직 및 서울특별시 청사 내에 있는 후생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4. 서울특별시 촉탁직(단, 예방접종 및 치아마모 치료 등 재료를 부담해야 하는 진료 항목은 제외하고 본인부담금이 들지 않는 진료 항목에 한한다.)

### 〈 서울특별시청부속의원 현황 〉

- 운영시간 : 연중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위 치 : 서소문청사 2동 1층

- 운영현황

구 분	의무실 (물리치료실)	치 과	한 의 원
인 력	4명 (의사 1, 간호사 2, 물리치료사 1)	3명 (치과 의사 1, 치과위생사 2)	3명 (한의사 1, 간호사 2)
진료내용	만성질환, 내과, 피부과 등 진료, 예방접종(7종), 증명서 발급, 물리치료, 외과적 단순 드레싱 등	잇몸질환, 마모증, 충치치료, 발치, 스케일링, X-ray 촬영, 구강검진 및 상담 등	한방진료 및 건강상담, 한의시술(침, 뜸, 부항) 물리치료, 보험한약지급
개 원 일	가정의학과 '66.12. 물리치료실 '22.6.	'97.1.	'13.6.
주요장비	심전도 등 25개	치과용 X-선 촬영기 등 13개	간섭파치료기 등 18개
면 적	77㎡(63㎡)	115㎡	55㎡
이용방법	가정의학과(직접 방문) 물리치료(1일 전 예약)	치과(1일 전 예약) 스케일링(금, 다음 주 예약)	한의원 (1일 전 예약)
이 용 료	무료(예방접종 제외)	무료(재료비 본인부담)	무료
이용인원	1일 평균 45명/140건	1일 평균 10명/34건	일평균 21명/43건

※ 출처 : 2026년 2월 13일 행정국 별도 제출자료.

- 이는 「의료법」 제35조제1항에서 의료인 등 외의 자가 소속 직원 등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진료 대상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음에 따른 것임.
- 다만, 현재 서울시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 56명, 본청과 사업소에서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요원 299명 등 총 355명이 근무와 복무를 하고 있음에도 부속의원을 이용할 수 없어, 같은 일터 내에서의 후생복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 파견 공무원 및 사회복지무원 현황 〉

(단위 : 명, '26.1.31.기준)

합계	파견 공무원* (타 기관 → 서울시)	사회복무요원	
		본청	사업소
355	56	10	289

\* 행정안전부(1), 개인정보보호위원회(1), 고용노동부(1), 문화체육관광부(1), 제주도(1), 부산시(1), 강원도(2), 인천시(1), 인사혁신처(11), 서울시 자치구(35) 등 총 56명  
 - 인사혁신처 소속 수습사무관 11명은 '26.5월 발령에 따라 서울시로 전입 예정

※ 출처 : 2026년 2월 13일 행정국 별도 제출자료.

○ 이에 본 개정안은 서울시에서 근무 중인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과 사회복지무원도 부속의원 진료가 가능하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소속에 관계없이 동일한 공간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의료 복지 혜택을 제공하여 후생복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다만, 「의료법」 제35조제1항은 부속의원 이용 대상자의 범위를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과 사회복지무원이 「의료법」상 “구성원” 범주 내에 포함되는지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하겠음.

※ 법제처는 「의료법」 제35조제1항 본문에서 부속 의료기관의 건강관리 대상을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이나 그 가족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해당 조직이 그 소속 직원 등의 건강관리를 위해 편익을 제공하고자, 수용자와 같이 비록 해당 기관 또는 조직의 소속 직원 또는 종업원은 아니지만 해당 기관 또는 조직의 감시 또는 감독을 받기 때문에 일반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여기에서 ‘소속 직원’은 ‘법제상 또는 편제상 특정의 조직에 소속되어 조직의 임용 및 지휘·감독의 대상이 되는 인적 대상’을, ‘종업원’은 ‘특정 조직에 고용되어 고용주의 요구에 따라 종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의 구성원’은 ‘그 소속 직원이나 종업원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여 조직 사업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구성체를 이루는 자’로서 해당 조직의 감시·감독을 받기 때문에 일반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려운 자를 뜻한다고 하고 있음(법제처 23-0356,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이 「의료법」 제35조제1항의 본문의 ‘그 밖의 구성원’에 포함되는지(「의료법」 제35조제1항 등), 2023.12.27.) 참조.

- 먼저,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은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이 서울시로 파견되어 근무 중이며,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받은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데, 파견 기간 동안 서울시장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므로 서울시의 “그 밖의 구성원”으로 보아 부속의원 이용 대상자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하겠음.

※ “파견”이란 공무원이 원소속의 변경 없이 일정 기간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거나 교육 훈련을 받은 후 원 소속 기관으로 복귀하는 제도를 말함(「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참조).

- 또한, “사회복무요원”도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서울시에서 복무 중이며, 소속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으며(「병역법」 제31조제4항), 복무 중 근무지 이탈이 제한되어 일반 의료기관 이용에 제약이 있는 신분적 특성을 고려할 때 “그 밖의 구성원”으로 보아 부속의원 이용 대상자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하겠음.

「병역법」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사회복무요원”(社會服務要員)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단체(公共團體)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제31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④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 근무하며,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거나 업무수행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숙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의2(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감독 등) ①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는 지방병무청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 따라서, 부속의원 이용 대상자에 서울시에 근무 중인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과 사회복지요원까지 확대는 「의료법」 제35조제1항 “그 밖의 구성원”에 대한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해석이 가능하므로, 조례에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는 실질적인 근무 여건 개선과 실질적인 복지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다고 하겠음.

○ 또한, 안 제3조제4항 부속의원 이용 대상자 확대(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 사회복지요원)가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제4호나목에 따라 “대상·방법·범위”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하는바, 본 개정안에서 대상과 방법은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 사회복지요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라고 하여 명확하나, 범위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기부행위 예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후생복지 인정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할 필요는 없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이하 ‘목’ 생략)
2. 의례적 행위(이하 ‘목’ 생략)
3. 구호적·자선적 행위(이하 ‘목’ 생략)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이하 ‘목’ 생략)

- 더욱이, 안 제3조제4항은 “...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 ‘부속의원 이용 확대’를 넘어, 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다른 후생복지제도까지 인정될 수 있는 포괄적 위임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는바, 조례의 위임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부속의원 이용’으로 한정하여 규정할 필요는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행정국은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과 사회복지무요원의 부속의원 이용에 있어서 무료 항목 제공과 유료 항목의 경우 비용은 본인부담으로 예방항목만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음.

- 진료종류 : (무료 항목) 제공 / (유료 항목) 예방접종만 제공 (비용 본인부담)
- ▶ 무료 항목(진료, 상담, 물리치료, 스케일링, 독감 예방접종 등)
  - ▶ 유료 항목(예방접종 6종) ※ 치경부마모증·충치·치아파절 치료 제외(촉탁직에 준함)

※ 출처 : 2026년 2월 2일 행정국 별도 제출자료.

전문위원	정찬일	입법조사관	최문숙
------	-----	-------	-----